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2나2023785(본소), 2022나2023792(반소),
2023나2051374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 (참가) 공사대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2나2023785(본소), 2022나2023792(반소),
2023나20513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19가합557421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선주, 김예림, 이재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지역주택조합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임동채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지성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인1. H

2. I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

담당변호사 김세현

변론 종결2024. 4. 19.

판결 선고2024. 6. 12.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19가합557421(본소), 2021가합566060(반소)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참가한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999,784,032원 및 그중 410,911,076원에 대하여는 2023. 8.

9.부터, 588,872,956원에 대하여는 2024. 2.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1) 피고(반소원고)에게 149,777,709원 및 그중 40,482,434원에 대하여 2021.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인 H에게 410,911,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인 I 주식회사에게 588,872,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승 계 참 가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가. 원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86,760,631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085,760,631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이 사건 2021. 12. 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1,040,266,4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승계참가인들

1) 원고는 피고승계참가인 H(이하 '참가인 H'이라 한다)에게 410,911,0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9. 20. 자 승계참가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피고승계참가인 I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I'이라 하고, 참가인 H과 통틀어 '참가인들'이라 한다)에게 588,872,9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3. 21. 자 승계참가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가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0. 11. 피고와 사이에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게 선금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도급계약서

2. 공사장소: 충북 진천군 D 일원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6개월(2016. 10. ~ 2018. 11.)

4. 건축연면적: 35,995.10m²(10,888.52평)

5. 건립규모: 지하 1층~지상 19층 3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6. 계약금액: 37,063,802,600원

○ 공급가액: 37,020,952,407원

○ 부가가치세: 42,840,193원

7. 기성금: 감리단 공정확인서 기준 기성 공정률에 의한 매 1개월 단위, 익월 15일 청구, 말일 지급
[별첨 1]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업무의 분담)

① 피고의 업무 및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조합설립인가 완료(변경인가 포함) 및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71%이상의 조합원

모집완료(착공 조건임)

제7조 (도급금액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하여 도급금액을 변경하기로 한다.

1. 피고의 서면 요구에 의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감소가 있을 때

2. 최초사업승인시의 설계도서가 변경되거나 사업승인조건의 추가나 변경의 경우

3. 본 계약 체결 이후 정부의 각종 법규 개정사항 반영 필요시

②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공사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되고 피고의 중단사유 해소 후 공사를

재개할 경우 중단된 기간과 관련한 현장관리비 등의 추가 경비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2조(공사의 착수 등)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조 제2항의 본 사업 부지를 인수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공사기간은 원고가 본조 제3항에 따라 공사를 착수한 날(이하 '실착공일'이라 함)로부터 26개월로 하며, 동 공사기간 내 사용검사를 필한 경우(일시사용승인이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원고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에 따른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⑤ 위 제3항에 따라 본 사업 부지를 인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간 협의된 공사비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였을 경우 실착공일은 자동 연장된다.

⑥ 위 제3항에 따라 본 사업 부지를 인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조합원의 2차계약금이 100% 완납되지 않았거나 공급세대의 70% 이상의 중도금 자서 및 대출실행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실착공일은 자동 연장된다.

[별첨 2]

공사관련 특약사항

제5조 (도급내역서)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제출하는 도급내역서는 감리 공정 확인을 위한 기성금 산출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를 사유로 피고는 공사도급액을 감액할 수 없다.

2) 원고는 2017. 3.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착수, 공사기간, 공사의 범위 및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조기착공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도급내역서의 송부 등

1) 원고는 2017. 7. 18. 이 사건 공사의 감리원(이하 '이 사건 감리원'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이하 '이 사건 도급내역서'라 한다)와 공사예정공정표를 송부하였고, 2017. 7. 20. 피고에게도 이 사건 도급내역서와 공사예정공정표를 송부하며 피고의 공사도급금액 수급에 관한 자금계획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 사건 감리원은 2017.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예정공정표의 경우 계약 당시의 문서라 볼 수 없고 물량산출 및 단가적용 근거가 없어 공정 확인을 위한 업무에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량산출 및 단가적용 근거에 의한 도급내역서의 작성이 어렵다면 추후 공정 확인 요청 시 하도급대금 지급 지출증빙(세금계산서 사본 등, 계약금액 미기재 무관) 등의 활용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송부하였다.

3)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공사비는 공사 실적 기준으로 정확하게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생산하기 바라며, 생산된 모든 자료(협력업체 자료는 사본)를 첨부하여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공사비를 청구하여 주기 바란다,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기성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린다, 공사에정공정표는 현재 기준으로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니 다시 한 번 검토, 수정한 후 현실과 맞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다. 기성금의 청구 및 지급

1) 원고는 2017. 8. 7. 피고에게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회 기성금으로 11억 2,800만 원(선급금 공제액 제외)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 및 원고가 직불을 요청한 하도급업체에게 1회 기성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에게 2017. 9. 22. 2회 기성금으로 5억 7,472만 원(선급금 공제액 제외), 2017. 11. 14. 3회 기성금으로 12억 5,600만 원(선급금 공제액 제외), 2017. 12. 22. 4회 기성금으로 9억 2,700만 원(선급금 공제액 제외)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각 그 무렵 원고 및 원고가 직불을 요청한 하도급업체에게 2회 기성금으로 5억 7,472만 원, 3회 기성금으로 12억 5,600만 원, 4회 기성금으로 461,640,06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8. 2. 13. 피고에게 4회 기성금 미지급분으로 465,359,940원, 5회 기성금으로 832,325,423원, 6회 기성금으로 301,225,690원을 2018. 2. 14.까지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2. 27. 원고가 직불을 요청한 하도급업체에게 450,604,732원을 지급하였다.

4)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4,870,964,792원(= 선급금 10억 원 + 1회 기성금 11억 2,800만 원 + 2회 기성금 5억 7,472만원 + 3회 기성금 12억

5,600만 원 + 4회 기성금 461,640,060원 + 2018. 2. 14. 자 지급금 450,604,732원)이다.

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1) 원고는 2018. 3. 2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타절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타절 합의서

제2조 (도급인의 통지와 시공권의 포기)

1. 원고는 본 합의서 체결 후 C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의 시공사 및 공동사업주체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며, 즉시 공사타절하기로 한다.

제3조(정산 등)

1. 원고는 본 공사타절합의서 날인 후 피고에게 본 사업의 기성공사비 및 정산금원을 청구하며, 피고는 정산금원을 원고 및 현장감리 합의 후 원고에게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본 공사타절합의서 체결 후 현장인수인계 업무에 대하여 피고의 대체 시공사와 원활하게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업무 인수인계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참가인 H의 승계참가신청 등

1) 참가인 H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상대로 철물 및 잡자재 등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2. 7. 'J'은 참가인 H에게 390,988,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3.부터 지급명령정보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374574), 위 지급명령은 2022. 12. 28. 확정되었다.

2) 참가인 H은 2023. 5. 3. 위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J'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4685 공사대금 사건 판결 등에 의하여 피고가 J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10,545,82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3타채57809), 2023. 6. 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4685 공사대금 사건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3) 참가인 H은 2023. 8. 7.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4685 공사대금 사건 판결 정본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3792(반소)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사건 판결 등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10,911,07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3타채61413, 이하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23. 8.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참가인 H은 2023. 9. 20.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3. 10. 6. 참가인 H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합405771), 위 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다.

바. 참가인 I의 승계참가신청 등

1) 참가인 I은 J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 10. 27. 'J은 참가인 I에게 537,360,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6.부터 2023. 5. 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합402383), 위 판결은 2023. 11. 21. 확정되었다.

2) 참가인 I은 2023. 11. 27. 위 판결 정본을 기초로 'J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차전7298 공사대금 사건 지급명령 등에 의하여 피고가 J에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88,507,70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타채72148), 2023. 12. 1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차전7298 공사대금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3) 참가인 I은 2024. 2. 14.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차전7298 공사대금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3792(반소)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사건 판결 등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88,872,95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4타채52357, 이하 '이

사건 제2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제2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24. 2.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참가인 I은 2024. 3. 21. 이 사건 제2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10, 12, 15, 16, 17, 24~27, 30, 33~37, 39,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7, 9, 18호증, 을나 제2~5호증, 을라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H의 본안전 항변 요지

참가인 H은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8. 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의 범위 내에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의 반소 중 참가인들이 받은 이 사건 제1, 2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참가인 H의 본안전 항변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반소의 소송물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410,911,07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참가인 H이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588,872,95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참가인 I이 이 사건 제2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제1, 2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2023. 8. 9. 및 2024. 2. 19. 순서대로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410,911,076원 및 이에 대한 제3채무자 송달일인 2023. 8. 9.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 '이 사건 제2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588,872,956원 및 이에 대한 제3채무자 송달일인 2024. 2. 19.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그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의 반소 중 위 돈(위 410,911,076원과 위 588,872,956원의 합계 999,784,032원 및 그 중 위 410,911,076원에 대하여는 위 2023. 8. 9.부터, 위 588,872,956원에 대하여는 위 2024. 2.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업무대행사인 K 주식회사는 2019. 5.경 J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4685 공사대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피고의 J에 대한 채무 12억 7,000만 원 중 2억 9,500만 원을 피고 대신 변제하였다. 또한 J은 2020. 10. 9. 피고에 대한 나머지 9억 7,500만 원(= 12억 7,000만 원 ~ 2억 9,500만 원) 부분 채권을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채무자로서 위 채권양도에 동의하였고, 2022. 10. 18. 및 같은 달 28.에는 L 또는 L이 지정한 제3자에게 피고 소유 진천군 M 아파트 6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위 채권양도에 따라 L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모두 대물변제하였다. 그렇다면 참가인 H은 피고의 J에 대한 채무가 전부 소멸한 후임이 명백한 2023. 5.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같은 해 6. 7.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므로, 참가인 H의 이 사건 승계참가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는 취지인데,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참가인 H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미지급 기성금 청구 가) 이 사건 도급내역서 기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되는 경우 산출내역서로의 의미를 가지는 이 사건 도급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한다는 특약이 있다(공사관련 특약사항 제5조). 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도급내역서에서 정한 전체 공사금액인 37,063,802,600원을 전체 공사비로, 기시공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인 5,997,341,082원을 이미 완성된 부분에 사용된 공사비로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당시의 기성고 비율은 16.18%(= 5,997,341,082원 / 37,063,802,60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은 5,997,341,082원(= 전체 공사비 37,063,802,600원 × 기성고 비율 16.18%)이다.

나) 실비 정산 방식 기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전까지 원고가 실제로 공사에 투입한 비용, 즉 실비 기준으로 기성금을 정산하여 왔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도 실비 정산 방식을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은 위 기준에 따라 실비 정산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제1심감정인 E은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실비 정산 방식에 따른 경우의 기성금을 6,084,398,540원(= 직접공사비 5,306,058,145원 + 간접공사비 및 기타비용 778,340,395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은 위 6,084,398,540원이다.

2) 추가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2018. 9.경 후속 업체에게 공사 현장을 인수인계할 때까지 현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근무직원 급료, 타워크레인 임대료, 현장관리비(경비) 등

추가공사대금 160,384,341원을 지출하고, 태풍(솔릭)에 대비한 배수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추가공사대금 1,881,1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대금은 합계 162,265,441원(= 160,384,341원 + 1,881,100원)이다.

3) 원고의 청구금액(일부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성금 '5,997,341,082원(이 사건 도급내역서 기준) 또는 6,084,398,540원(실비 정산 방식 기준)'에 추가공사대금 162,265,441원을 합한 6,159,606,523원(= 5,997,341,082원 + 162,265,441원, 이 사건 도급내역서 기준) 또는 6,246,663,981원(= 6,084,398,540원 + 162,265,441원, 실비 정산 방식 기준)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공사대금 합계 4,870,964,79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288,641,731원(= 6,159,606,523원 - 4,870,964,792원, 이 사건 도급내역서 기준) 또는 1,375,699,189원(= 6,246,663,981원 - 4,870,964,792원, 실비 정산 방식 기준)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그중 일부청구로 1,286,760,63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미지급 기성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그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819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기성고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달리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의 공사대금청구권 발생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이 사건 합의서 제3조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비 및 정산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당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도급내역서 기준 정산 특약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7면 1행~9면 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면 중, ① 1행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를 "앞서 든 각 증거"로, ② 3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③ 6행의 "을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을 "갑 제14호증, 을 제8, 10~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20행~9면 4행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9면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직후인 2018. 7. 5. 피고에게 '현재까지 이 현장은 공사도급계약서만 있으며 내역서는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기성금 산정의 근거자료로 사용된 도급내역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기도 하였다.』

다) 실비 정산 방식 기준 정산 특약의 존재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해제될 경우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합의서도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제3조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본 사업의 기성공사비 및

정산금원을 청구하며, 피고는 정산금원을 원고 및 현장감리 합의 후 원고에게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한 비용' 전부를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원고 스스로도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합의서는 기성공사비 및 정산금원의 지급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인정한 바 있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이 사건 감리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직후부터 기성금 등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산 방식에 관하여 대립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직접공사비 + 직접공사비에 일정 비율(11.8335%)을 곱한 간접공사비 - 부실 공사 금액 - 기타 설계사무소 관련 비용, 정화조 이중 비용계산 금액 등 - 선급금'으로 정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원고는 동의한 바 없다'며 피고의 위와 같은 정산 방식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와 피고, 이 사건 감리원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기 전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면, 이 사건 감리원이 원고의 청구 내용이 공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감리원이 확인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성금을 정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 전부를 피고가 기성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감리의 확인을 거쳐 원고가 투입한 '직접공사비'와 '직접공사비에 일정비율(11.83335%)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간접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한 것(이하 '기존 정산 방식'이라 한다)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원고와 피고가 도급계약 해제 이전의 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 전부를 피고가 지급하는 방식의 정산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게다가 피고가 기존 정산 방식, 즉 원고가 제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토대로 이 사건 감리원을 통해 공정률을 확인한 후 이에 기초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따랐던 것은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감리원과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도급내역서 등에 물량산출 및 단가적용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취한 조치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비용인 실비를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바, 기성고 비율 산정 특약의 내용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는 물론 감정 신청 당시에도 실비 산정 방식 기준으로 기성금을 감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감정기일에 갑자기 실비 산정 방식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기성금 감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기성금 감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9. 12. 27. 자 감정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감정 신청 사항을 통하여 '원고가 지출한 원가(하도급대금) 기준으로 간접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기성금을 산정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요청, 2021. 7. 6. 자 감정보완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직접공사비)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이다. 피고가 실비 산정 방식 기준으로 기성금을 감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⑦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착공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조기착공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조기 착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조합원 모집 및 사업비 확보에 실패하여 원고에게 4회 기성금 중 일부를 지급한 후에는 기성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중도타절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된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실제 투입한 비용 전부를 피고가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이 사건 도급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 전부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실투입비용 전부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면, 원고가 필요 이상의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에도 피고는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나아가 원고가 지출 비용을 부풀려서 주장할 위험도 있으므로, 기성 공정률과 무관하게 원고가 투입한 비용 전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은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라) 기성고 비율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이 사건 도급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원고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특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수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1심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는 7,569,343,662원이고,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는 66,146,947,504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고는 3,805,789,126원[= 이 사건 도급계약상 총 공사대금 37,063,802,600원 × 기성고 비율(= 기시공 공사비 7,569,343,662원 ÷ (기시공 공사비 7,569,343,662원 + 미시공 공사비 66,146,947,504원),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이 된다.

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현장근무직원 급료, 타워크레인 임대료, 현장관리비(경비) 합계 160,384,341원
관련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2항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공사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되고 피고의 중단사유 해소 후 공사를 재개할 경우 중단된 기간과 관련한 현장관리비 등의 추가 경비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중단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의 조정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태풍 대비 정비비용 1,881,100원 관련

갑 제9, 40호증 등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1항 제1호가 '피고의 서면 요구에 의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감소가 있을 때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하여 도급금액을 변경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감리원은 2018. 8.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2018. 8. 23. 제19호 태풍(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른 현장 수방대책[① 기 시공된 지하주차장 배수를 위한 장비 및 배수인력 배치, ② 사업부지 서측의 사토장 법면 유실방지 및 배수로 정비, ③ 비상근무 운영(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시 비상근무자 배치) 등] 수립을 요청한다, 기 시공된 구조물 및 인근 주민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오니 위와 같은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우로 인한 재해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한 사실, 원고는 2018. 11. 27. 피고에게 '제19호 태풍 솔릭 대비 배수작업 및 배수로 정비작업 관련 비용 지급 요청 - 17번 국도변 개발행위 완료에 따른 가설울타리 재설치 및 19호 태풍 솔릭 대비 현장내 배수 작업 및 배수로 정비 등에 1,881,100원 소요'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게 '태풍 대비 비용에 대하여, 비용이 투입된 것은 인정하며, 정산 시에 이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정산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시점에서 다른 주장을 하지 않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원고가 태풍 대비 배수작업 및 배수로 정비작업에 지출한 비용은 891,000원[= N 관련 지출비용 528,000원 + (주)○ 관련 지출비용 36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태풍 대비 정비비용 관련 추가공사대금 89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부분 추가공사대금으로 1,881,1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추가공사대금이 위 891,000원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두 금액의 차액 990,000원은 태풍 대비 정비비용이 아니라 원고의 이 부분 청구와 무관한 가설울타리 재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3,806,680,126원(= 미지급 기성금 3,805,789,126원 + 추가공사대금 891,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이미 4,870,964,792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8. 3.경 해제되었고, 해제 당시 원고의 미지급 기성금이 3,805,789,126원인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후 발생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이 891,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가 4,870,964,79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가 완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실효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3,806,680,126원(= 미지급 기성금 3,805,789,126원 + 추가공사대금 891,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한 4,870,964,79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위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으로 인하여 1,064,284,666원(= 위 4,870,964,792원 - 위 3,806,680,126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1,064,284,66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410,911,076원

및 이에 대한 2023. 8. 9.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 '이 사건 제2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588,872,956원 및 이에 대한 2024. 2. 19.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은 ① 부당이득금 잔액 40,482,434원(= 부당이득금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040,266,466원 -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410,911,076원 - 이 사건 제2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588,872,95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410,911,076원에 대하여 위 2021. 9. 24.부터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기 전날인 2023. 8. 8.까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38,501,805원[= 410,911,076원 × 5/100 × (1 + 319/365)], ③ 이 사건 제2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588,872,956원에 대하여 위 2021. 9. 24.부터 이 사건 제2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기 전날인 2024. 2. 18.까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70,793,470원[= 588,872,956원 × 5/100 × (2 + 148/366), 원 미만 반올림]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49,777,709원(= 위 40,482,434원 + 위 38,501,805원 + 위 70,793,470원) 및 그중 40,482,434원에 대하여 위 2021.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참가인들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이 사건 반소의 소송물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제1, 2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① 참가인 H에게 추심금 410,911,07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2023. 9. 20. 자 승계참가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참가인 I에게 추심금 588,872,95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2024. 3. 21. 자 승계참가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중 '999,784,032원 및 그중 410,911,076원에 대하여는 2023. 8. 9.부터, 588,872,956원에 대하여는 2024. 2.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와 참가인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참가한 참가인들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강승준

판사김민아

판사양석용

1) 2023. 8. 18. 자 피고 소송위임장 참조

2) 피고는 참가인들 중 참가인 H의 승계참가신청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